

모든 노동자의 건강할 권리



우리나라 산업보건제도의 향후 10년은 모든 노동자의
건강할 권리가 안착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실 실장

직업병 예방이나 보상을 넘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구호가 산업보건의 모토로 등장한 것은 꽤 오래되었다. 과거의 산업보건은 소음성 난청, 진폐증처럼 전형적인 직업병을 예방하고 보상하는 제도가 중심이었다. 2000년대의 산업보건은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등 일반인구에서도 흔한 질병의 관리로 초점이 이동했다. 2010년을 전후해서는 직업성 암, 다양한 희귀질환으로까지 확장되어, 오늘날에는 미지의 위험요인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 이는 인과관계가 뚜렷한 전형적 직업병 관리로부터 일반인구에서도 흔하지만 노동자에게도 문제가 되는 질병으로 보건제도의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90여 종의 작업장 위험요인에 대해 매년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178종의 위험요인에 대해 약 200만 명의 노동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산업보건 제도는 양적, 질적 발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의 산업보건은 모든 노동자의 건강권리를

제언

유엔의 선언문은
모든 사람이
갖는 건강권에
대한 것인데,
모든 노동자에게
건강이 권리임을
선언함으로써 차별,
폭력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여
건강불평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다.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은 제조업의 물리적, 화학적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쉽도록 설계되어 소규모사업장, 비제조업, 비정규직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제도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외, 플랫폼 노동처럼 새로운 노동 형태의 출현, 직무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의 대두,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업장 내 정신보건의 문제 등을 현재의 산업보건 제도 틀거리에서 모두 담아내기는 쉽지 않다.

지난달 UN 고위급 회의에서는, 전세계의 보편적 의료 보장을 위한 선언을 준비하면서 노동자 건강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는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2019년 9월에 ‘Moving together to build a healthier world’를 모토로 개최되는 고위급 회담에서 채택될 선언문이었다.

이 선언문은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장, 산업보건 서비스의 필수 제공, 모든 노동자에게 보건의로 제공 등의 조항과 모든 형태의 폭력, 공격, 차별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항시적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할 것 등을 포함하였다. 이는 최초로 노동자 건강이 유엔 고위급 선언에 포함되는 것으로 총 66개 조항 중 29번째와 52번째 항목이 노동자의 건강과 관련된 항목이다¹⁾.

유엔의 선언문은 모든 사람이 갖는 건강권에 대한 것인데, 모든 노동자에게 건강이 권리임을 선언함으로써 차별, 폭력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여 건강불평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감한 산업보건 이슈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산업노동자의 건강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산업보건제도의 향후 10년은 모든 노동자의 건강할 권리가 정착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1) <https://www.un.org/pga/73/2019/05/17/universal-health-coverage-8/>